

서면 답변서

2025. 10.

법 제 처

- 목 차 -

I. 김용민 위원

1.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현황 및 문제점 3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은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 유형(이해충돌금지원칙상 한계, 권력분립 원리상 한계,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에 따른 한계)에서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 2-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 4
 -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리는 시행령 개정
 - 특히, 검찰청법 제4조가 규정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위임했는데, 검찰은 예규의 삭제된 조항을 되살려 위임 한계를 위배함
- 2-2.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 5
 - 입법 사항을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 사례(경찰국 신설, 검수원복,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가 있는데, 이는 명백히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정입법이 아닌지?
- 2-3. 불합리한 시행령 개선 관련 6
 - 법률에 따르지 않는 단독 제·개정한 시행령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토가 필요
- 3-1.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Lawbot)의 누적방문율을 제외하고, 재방문율·정확도·검색결과 만족도 등 실질적 이용성과 지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7

- 3-2. 서비스 개통 이후 국민의 법령 민원 및 해석 요청 건수가 감소했는지? 8
- 3-3. AI 답변의 신뢰성 검증하기 위한 내부관리·검증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9
- 3-4. 국민이 잘못된 법령정보를 활용해 불이익을 받았을 때 구제 수단이 있는지? 10
- 3-5.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출처, 품질 검증기준,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11
- 3-6. AI 학습 데이터가 ‘특정 해석 방향’이나 ‘편향된 사례’로 왜곡될 가능성은 어떻게 방지하고 있는지? 11
- 4-1.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법제처의 구체적 지원·준비 현황은? 12
- 4-2.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해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했는지? 실시했다면 분석 결과, 입법예고 시점, 영향 대상, 예상 비용 또는 규제부담 수치는? 13
- 4-3. 지난 1월 ‘인공지능 관련 법령 간 정합성 검토 및 법제개선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낸 후 관계 법령 간 충돌 가능성·중복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14
- 4-4. 공공부문 AI 활용에 대한 법적 책임·검증기준을 마련해놓았는지?
- 4-5. 공공기관이 AI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알고리즘 편향 등 기술적·윤리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표준이 있는지? 15

II. 서영교 위원

1-1-1. 윤석열 정부의 위법한 시행령 통치	19
- 국회가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한정했음에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2. 8.)하여 다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 등을 부활시켰는데, 이는 명백히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정입법이 아닌지?	
1-1-2. 윤석열 정부의 위법한 시행령 통치	20
- 22.8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심사하면서 입법 예고기간을 40일에서 17일로 단축한 이유	
1-2. 법률 근거 없는 조직 신설 -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21
-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모두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됐는데,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시행령으로 신설했다면 헌법 위반 아닌지?	
- 당시 청와대나 장관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1-3. 법제처의 견제 기능 부재	22
- 법제처의 행정입법 사전심사 기능이 무력화된 원인	
1-4. 불합리한 시행령 개선 관련	23
-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TF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행령을 대상으로 하는지?	
- 이미 발굴된 위법·편법 시행령은 몇 건이며, 언제까지 정비할 계획 인지?	
- 핵심 개선 과제로 지정한 시행령 목록을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1-5. 비상계엄 당시 회의 및 윤석열 대통령실 파견 인원 현황	24

1-6. 비상계엄(국가비상사태) 법제처 행동 매뉴얼	24
2. 법사위 의결에 따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청 등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에 따르면, 안전 심의나 국정감사 및 조사,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는 국회의 유권해석 또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 법제처는 입법부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여, 국정감사와 직접 관련된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에 따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3.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정입법상황실의 적극 대응 필요	26

Ⅲ. 조배숙 위원

1. 조원철 처장 임명이 대통령 사건 번호 경력·정치적 지지와 연동된 보은 인사로 비치는 상황, 이것이 공직 인사의 기준과 부합하는지	29
- 국가 법령해석기관의 독립성·중립성 원칙을 감안할 때, 이번 인사가 이해충돌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 보은 인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부인 하고, 향후 쟁점 사안에 처장 개인의 관여를 배제할 것인지	

2. 국정과제 1호 ‘4년 연임제 개헌’ 연임가능성	30
-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는 연임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법제처 공식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할 의사가 있는지?	
- 제128조 제2항의 개정·삭제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3. 국정입법상황실의 국정입법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국회 심의 자율보장을 위한 개입 최소화·투명화 장치 마련 검토 필요	31
4. 내란특별재판부	32
- “대법원장이 최종 선정하면 위헌 소지가 없다”는 기존 발언을 여전히 유지하는지?	
- 법원행정처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과 상충되는 지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의사가 있는지?	
5. ‘성평등가족부’ 명칭이 헌법 제36조제1항의 ‘양성의 평등’과 합치한다고 보는지?	33
- 법제처는 ‘성평등’의 범위가 성별정체성·성적지향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는지?	
- 정부조직법 명칭 변경 이후 상위법·하위법·행정지침 간 용어 충돌이 없다고 보는지?	

Ⅳ. 박은정 위원

1. “지자체별 특화 법제 지원”, 계절근로자 조례 교통정리 필요	37
2. 정부 제출 민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평균 심사기간의 20배	39

김용민 위원

- 1 -

1.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현황 및 문제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은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 유형(이해충돌금지원칙상 한계, 권력분립 원리상 한계,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에 따른 한계)에서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 담당자: 법제정책총괄과 전해정 서기관 ☎ 044-200-6562 >

- ☐ 헌법 제53조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된 법안들이 어떠한 내재적 한계 유형에 해당되는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

-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리는 시행령 개정
- 특히, 검찰청법 제4조가 규정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위임 했는데, 검찰은 예규의 삭제된 조항을 되살려 위임 한계를 위배함

< 담당자: 행정법제국 남지은 사무관 ☎ 044-200-6604 >

- ☐ 지난 정부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당시 여러 비판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법무부에서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게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2025. 9. 26.~11. 5.)으로, 심사 의뢰되면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임

- 3 -

- 4 -

2-2.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

- 입법 사항을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 사례(경찰국 신설, 검수원복,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가 있는데, 이는 명백히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정입법이 아닌지?

< 담당자: 행정법제국 고세로미 서기관 ☎ 044-200-6607 >

-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모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새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직제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음.

구분	관련 법령	개정 시기(지난 정부)	정비 현황
행안부 경찰국 관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2. 8. 2. 공포·시행	개정 완료 (25. 8. 26. 공포·시행)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2. 6. 7. 공포·시행	개정 완료 (25. 6. 10. 공포·시행)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2. 6. 7. 공포·시행	개정 완료 (25. 6. 10. 공포·시행)

2-3. 불합리한 시행령 개선 관련

- 법률에 따르지 않는 단독 제·개정된 시행령들에 대한 전수 조사와 검토가 필요

< 담당자: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 손지민 사무관 ☎ 044-200-6745 >

- 법제처는 임시조직인 불합리한 행정법령 개폐 전담 TF를 구성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하고 있음.
- 현재 규제 관련 주요 언론보도나 대외 기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 중임.

3-1.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Lawbot)의 누적방문율을 제외하고, 재방문율·정확도·검색결과 만족도 등 실질적 이용성과 지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

< 담당자: 법령데이터혁신팀 하선우 서기관 ☎ 044-200-6784 >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으로 법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지난 '24년에 대국민 개통하였고,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이상이 83.7%로 조사됨

* (기간 / 참여자) '25.3.17.~'25.3.25. / 15,222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3.4%	40.3%	14.3%	1.3%	0.7%

- '26년부터 구축 예정인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사업에서 국민들의 이용 만족도 등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문자 관리 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3-2. 서비스 개통 이후 국민의 법령 민원 및 해석 요청 건수가 감소했는지?

< 담당자: 법령데이터혁신팀 하선우 서기관 ☎ 044-200-6784 >

- 법제처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국민의 법령검색 안내를 위한 전화민원 응대를 하고있는데,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개통('24.12.)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전화민원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24년 동월 대비 2025년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화민원 건수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4년	736	598	751	444	445	672	608	628	238	432	438	229
	↓	↓	↓	↓	↓	↓	↓	↓				
2025년	381	427	417	415	251	297	440	413				

3-3. AI 답변의 신뢰성 검증하기 위한 내부관리·검증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 담당자: 법령데이터혁신팀 하선우 서기관 ☎ 044-200-6784 >

- ☐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AI 언어모델을 도입하지 않고 사용자 질문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법조문만을 검색결과로 제공하고 있으며,
- ☐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구축 사업 예산은 '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상황으로, '26년부터는 사용자의 의도를 추론하여 법령외에 관련된 판례·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검색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예정임
 - 특히 법령정보 검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분야 특화 언어모델 (sLLM)을 개발하고, RAG 및 학습 데이터셋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임

3-4. 국민이 잘못된 법령정보를 활용해 불이익을 받았을 때 구제 수단이 있는지?

< 담당자: 법령데이터혁신팀 하선우 서기관 ☎ 044-200-6784 >

- ☐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에서는 구체적인 사건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령조문, 판례나 해석례 등의 객관적인 법령정보를 AI를 이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예정으로,
 - 검색 결과에 구체적인 근거조문이나 판례번호 등의 출처를 함께 제공하여 국민이 잘못된 법령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
- ☐ 따라서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에서는 구체적인 추론 결과가 아닌 사용자 질문의도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법령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계획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3-5.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출처, 품질 검증기준,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 담당자: 법령데이터혁신팀 하선우 서기관 ☎ 044-200-6784 >

- ☐ '26년 정부 예산안에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구축 사업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고,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 확정 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3-6. AI 학습 데이터가 '특정 해석 방향'이나 '편향된 사례'로 왜곡될 가능성은 어떻게 방지하고 있는지?

< 담당자: 법령데이터혁신팀 하선우 서기관 ☎ 044-200-6784 >

- ☐ '26년 정부 예산안에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구축 사업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고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 확정 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 법령정보는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생성형 AI 법령 정보 서비스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추론 결과나 해석을 제공하지 않고 객관적인 법령정보만을 알기 쉽게 제공할 계획임

4-1.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법제처의 구체적 지원·준비 현황은?

< 담당자: 미래법제혁신기획단 박문식 사무관 ☎ 044-200-6743 >

- ☐ 과기정통부와 협업하여 법령안 초안의 법제적 쟁점에 대한 지원(자료, 검토)을 실시(2025. 上)한 바 있음.
- 현재,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중으로,
 - 법제처는 내년 법 시행('26.1.22.)을 앞두고 조속한 법령심사 등 시행령 제때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2.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해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했는지?
실시했다면 분석 결과, 입법예고 시점, 영향 대상, 예상 비용
또는 규제부담 수치는?

< 담당자: 미래법제혁신기획단 김혜진 사무관 ☎ 044-200-6744 >

- ☐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행정분야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법령에 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 중인바,
-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은 현재 입안단계에 있는 법령안으로 현행법령이 아니므로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13 -

4-3. 지난 1월 '인공지능 관련 법령 간 정합성 검토 및 법제개선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낸 후 관계 법령 간 충돌 가능성·중복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 담당자: 미래법제혁신기획단 박문식 사무관 ☎ 044-200-6743 >

- ☐ 해당 연구용역은 2025. 2. 6.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하여, 3. 31.에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11. 17.까지로 현재 연구 진행 중임.

- 14 -

4-4. 공공부문 AI 활용에 대한 법적 책임·검증기준을 마련해놓았는지?
4-5. 공공기관이 AI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알고리즘 편향 등
기술적·윤리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표준이 있는지?

< 담당자: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오정에 서기관 ☎ 044-200-6741 >

- ☐ 법제처에서 공공부문 AI 활용에 대한 법적 책임, 검증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한 바는 없음.

※ 참고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 초거대 AI를 도입·활용하는데 필요한 관련 기준, 절차, 고려사항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을 마련(25.4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5 -

서영교 위원

- 17 -

1-1-1. 윤석열 정부의 위법한 시행령 통치

- 국가가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한정했음에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2. 8.)하여 다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 등을 부활시켰는데, 이는 명백히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정입법이 아닌지?

< 담당자: 행정법제국 남지은 사무관 ☎ 044-200-6604 >

- ☐ 지난 정부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당시 여러 비판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법무부에서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게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2025. 9. 26.~11. 5.)으로, 심사의뢰되면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임

- 19 -

1-1-2. 윤석열 정부의 위법한 시행령 통치

- 22.8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심사하면서 입법예고기간을 40일에서 17일로 단축한 이유

< 담당자: 법제정책총괄과 전해정 서기관 ☎ 044-200-6562 >

-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8861호, 2022.5.9. 공포, 9.10. 시행)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령안으로,
- 하위법령 제때 마련을 통한 사법체계의 혼란 방지와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일(22.9.10.)에 맞추어 하위법령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부처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한 바 있음.

- 20 -

1-2. 법률 근거 없는 조직 신설 -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모두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됐는데,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시행령으로 신설했다면 헌법 위반 아닌지?
- 당시 청와대나 장관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 담당자: 행정법제국 고새로미 서기관 ☎ 044-200-6607 >

- ☐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모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새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직제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음.

구분	관련 법령	개정 시기(지난 정부)	정비 현황
행안부 경찰국 관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2. 8. 2. 공포·시행	개정 완료 (25. 8. 26. 공포·시행)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2. 6. 7. 공포·시행	개정 완료 (25. 6. 10. 공포·시행)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2. 6. 7. 공포·시행	개정 완료 (25. 6. 10. 공포·시행)

1-3. 법제처의 견제 기능 부재

- 법제처의 행정입법 사전심사 기능이 무력화된 원인

< 담당자: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전해정 서기관 ☎ 044-200-6562 >

- ☐ 법제처는 법령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안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법령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이견이 있는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고 있음.
-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법제처의 법령심사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음.

1-4. 불합리한 시행령 개선 관련

-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TF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행령을 대상으로 하는지?
- 이미 발굴된 위법·편법 시행령은 몇 건이며, 언제까지 정비할 계획인지?
- 핵심 개선 과제로 지정한 시행령 목록을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 담당자: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 손지민 사무관 ☎ 044-200-6745 >

- ☐ 법제처는 시대 변화 등에 따라 법률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구성·운영 중임.
- 현재 1차적인 정비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별 소관 부처와 정비 방향 등에 대해 협의 중으로, 협의 절차가 완료되면 정비 과제 목록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임.

1-5. 비상계엄 당시 회의 및 윤석열 대통령실 파견 인원 현황

< 담당자: 운영지원과 강륜형 주무관 ☎ 044-200-6523 >

< 담당자: 운영지원과 하정윤 주무관 ☎ 044-200-6530 >

- ☐ 국장급 이상 사무실에서 상황 공유
- ☐ 2024. 12. 3. 당시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어 있던 공무원은 총 2명임

1-6. 비상계엄(국가비상사태) 법제처 행동 매뉴얼

< 담당자: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이연희 보좌관 ☎ 044-200-6552 >

- ☐ 법제처에서 관리 중인 비상계엄(국가비상사태) 관련 법제처 행동 매뉴얼은 없음.

2. 법사위 의결에 따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청 등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에 따르면,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 및 조사, 인사 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는 국회의 유권해석 또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 법제처는 입법부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여, 국정감사와 직접 관련된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에 따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법령해석총괄과 김도현 사무관 ☎ 044-200-6711 >

- 법제처 법령해석업무는 법 집행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 의견을 전제로, 법령해석과 관련된 ‘행정부 내부’의 견해를 통일해 일관성 있게 법령을 적용하고 집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행정부 내의 2차적·보충적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정입법 상황실의 적극 대응 필요

< 담당자: 국정입법상황실 이선미 사무관 ☎ 044-200-6846 >

- 국정입법상황실(8. 25. 설치)을 중심으로 국정입법 진행 상황의 실시간 관리, 지연 우려 법안 및 입법 장애요인의 선제적 파악, 법안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제시하는 등 체계적·전략적 국정입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국정과제 입법 쏠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국회와의 협력·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민생·경제 관련 법안 등 계류 법안의 신속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1. 조원철 처장 임명이 대통령 사건 변호 경력·정치적 지지와 연동된 보은 인사로 비치는 상황, 이것이 공직 인사의 기준과 부합하는지
 - 국가 법령해석기관의 독립성·중립성 원칙을 감안할 때, 이번 인사가 이해충돌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 보은 인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부인하고 향후 쟁점 사안에 처장 개인의 관여를 배제할 것인지

< 담당자: 운영지원과 하정윤 주무관 ☎ 044-200-6530 >

- ☐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 평소의 가치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제처장으로 임명했다고 생각함
- ☐ 법제처와 법제처장은 공정한 법제심사와 법령해석을 통해 실질적인 법치행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임

2. 국정과제 1호 ‘4년 연임제 개헌’ 연임가능성
 -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는 연임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법제처 공식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할 의사가 있는지?
 - 제128조 제2항의 개정·삭제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 담당자: 행정법제국 강형석 사무관 ☎ 044-200-6614 >

- ☐ (질의사항 1)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대한민국헌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로 판단됩니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서는 “법령”을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헌법」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사항 2) 「대한민국헌법」 제128조제2항의 개정·삭제에 대해 법제처가 검토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국정입법상황실의 국정입법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국회 심의 자율보장을 위한 개입 최소화·투명화 장치 마련 검토 필요

< 담당자: 국정입법상황실 이선미 사무관 ☎ 044-200-6846 >

- ☐ 국정입법상황실의 ‘국정입법 관리’ 등 업무는 국정입법 진행상황 점검, 지연 우려 법안 및 입법 장애요인의 선제적 파악,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회 심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는 없음.
- 앞으로도 국정입법 관리 과정에서 국회 심의 자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 내란특별재판부
 - “대법원장이 최종 선정하면 위헌 소지가 없다”는 기존 발언을 여전히 유지하는지?
 - 법원행정처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과 상충되는 지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의사가 있는지?

< 담당자: 행정법제국 남지은 사무관 ☎ 044-200-6604 >

- ☐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고 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5. ‘성평등가족부’ 명칭이 헌법 제36조제1항의 ‘양성의 평등’과 합치한다고 보는지?
- 법제처는 ‘성평등’의 범위가 성별정체성·성적지향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는지?
 - 정부조직법 명칭 변경 이후 상위법·하위법·행정지침 간 용어 충돌이 없다고 보는지?

< 담당자: 행정법제국 고새로미 서기관 ☎ 044-200-6607 >

- ☐ 성평등가족부 명칭이 헌법 제36조제1항에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 제정·개정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명칭 변경 및 소관 업무 개편을 관계 법령 등에 반영하였음.

박은정 위원

1. “지자체별 특화 법제 지원”, 계절근로자 조례 교통정리 필요

< 담당자: 자치법제지원과·곽지영 사무관 ☎ 044-200-6748 >

- ☐ 법제처는 중앙·지방 간 법제 분야에서 조정·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에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협의체가 참여하도록 확대 개편* 추진 중임
- * 「법제업무 운영규정」 입법예고 중(~11.25.)
- ☐ 자치입법조정협의회의 제도적 완비 추진과 함께, 계절근로자 관련 자치법제 차원의 논의사항에 대해 광역·기초 지방정부 및 소관부처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협의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그 밖에 지방정부에 조례정비안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음

2. 정부 제출 민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평균 심사기간의 20배

< 담당자: 행정법제국 남지은 사무관 ☎ 044-200-6604 >

- ☐ 민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60여년 만에 법률행위, 계약,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등에 관한 민법 규정의 대대적인 개정으로 그 개정사항이 많으며,
- 이와 연관된 상법 및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였고,
- 개정 내용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법무부와 여러 차례 개정 내용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린 점 양해 바람
- ☐ '25. 11. 중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기국회 내 국회 제출 예정임

법제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

-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 제29조의4제2항제4호 신설
- 제29조의4(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①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을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이하 “자치입법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자치입법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제처장장
2.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 소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실장, 국장, 본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나. 시, 군 및 자치구: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신 설>
- ③ 자치입법조정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한다.
- ④ 자치입법조정협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치입법조정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거나 정부외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자치입법조정협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⑤ 제2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조정협의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 소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 (참고) 「지방자치법」
-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 ② ~ ⑦ (생 략)